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 (의견표명)

□ 민원 제목 : 준공검사를 위한 개발행위 재허가 및 원상복구 이의

□ 신청 취지

○ 신청인은 2018년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물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진행해온 (주)○○○ 대표의 불의의 사고·사망 및 업체의 폐업으로 불가피하게 준공 신청을 제때 하지 못해 개발행위허가가 취소된 것인바, 준공검사를 위해 개발행위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고 완료된 시설물을 원상회복하여 재설치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너무나 부당한 행정이니 준공 검사를 처리해 달라

□ 피신청인 등의 주장

○ 해당 토지의 태양광 발전시설은 (주)○○○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여 시설물 공사까지 완료하였지만, (주)○○○ 대표의 사망으로 인해 허가 기간 내 준공검사 신청을 하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33조, 제13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취소 청문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취소되었음

○ 이에 신청인이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신청인 명의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였지만 2021. 4. 26.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현재 조례상 주택과의 이격거리 요건과 부합하지 않아 해당 토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입지할 수 없는 상황임

## □ 사실관계

○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2017. 8. 26. 발주자 신청인, 수급자 (주)○○○ 이름으로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로써 신청인과 (주)○○○과의 위임관계가 성립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입출금 거래내역을 확인하였다.

○ (주)○○○은 이 민원 토지에 2018. 4. 24. 개발행위허가(허가기간: 2018. 4. 24. ~ 2019. 12. 31.)를 득하여 태양광 발전시설물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8년 11월경 시설물 공사를 완료하였다.

○ 이후 신청인은 전기안전 공사를 진행하고 2019년 1월 한국전력 공사와 발전전력 거래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신청인은 2019년 2월부터 현재(’23년 5월)까지 한전으로부터 매달 태양광 발전전력 금액을 입금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시설물 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 절차만 남겨 놓은 상태에서 당시 (주)○○○의 대표가 2018. 10월경 큰 교통사고를 당해 1년 이상 △△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도 회복되지 않아 실제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주)○○○ 대표는 2020. 10월 끝내 사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 (주)○○○ 대표의 아들은 아버지가 병원에 1년 넘게 장기입원하고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 수가 없어 2019. 8. 16. 자로 폐업신고를 하였고, 폐업사실증명서를 통해 확인하였다.

○ 피신청인은 2022. 6. 30. 청문을 실시하여 허가 기간 내 준공이 완료되지 않은 신청인의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취소 결정을 하였다.

○ 신청인은 허가 취소 사실을 뒤늦게 알고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를 진행하고자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시설물의 설치가 완료된 토지의 원상복구와 개정된 조례 기준에 따라 주거지역과의 거리 제한으로 피신청인으로부터 보완 통보를 받았다.

## □ 관계 법령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 □ 판단 및 결론

○ ① 신청인의 태양광 발전시설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여 적법하게 시설을 완공한 점, ② 준공절차 시기에 위임받은 업체 대표의 불의의 교통사고로 장기입원과 수차례 수술을 진행하였으나 끝내 사망하였고, ③ 준공 만료기간인 2020년 12월 이전에 업체가 이미 폐업된 상태여서 준공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점이 있었으며, ④ 신청인은 전기안전공사,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계약을 진행하여 2019년 1월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전력 거래계약 체결 후 한전으로부터 매달(2019. 2. ~ 2023. 5. 현재) 전력생산 금액을 입금받고 있어 태양광 발전시설을 실제 5년 동안 가동해오고 있는 점, ⑤ 태양광 발전시설이 완공되어 실제 전력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상복구 하는 것은 국가적, 사회적인 낭비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바, 적법한 절차에 의해 피신청인의 허가를 득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완공되었고, 그 결과 전력생산을 하고있는 점을 감안하면 준공 절차 등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가 완료된 당시의 규정(「아산시 도시계획 조례」)을 적용 및 준공검사의 기회를 부여하여 합리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준공 허가해 줄 것을 의견표명 한다.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 (의견표명)

### □ 민원 제목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횟수 제한 이의

#### □ 신청 취지

○ 신청인은 「아산시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에 육아휴직 장려금은 6개월간 지원하도록 되어있으나, 지급 횟수를 1회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조례에 규정된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므로 횟수 제한없이 6개월의 기간 동안 지급하여 달라

#### □ 피신청인 등의 주장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대상자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한 남성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아산시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최대 6개월간 지원하고 있음. 본 조례에서 육아휴직 대상 아동에 대하여 1회에 한한다는 규정은 일가정 양립 지원이라는 조례 제정 취지를 제한하고 있고, 인근 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지자체 조례에도 제한 규정이 없음. 이에 따라 1회에 한한다는 제한 문구는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음

#### □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22. 10. 27.부터 2022. 12. 27.까지 육아휴직을 실시하고 2022. 12. 14.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여 2022. 12. 26. 30만 원, 2023. 2. 10. 30만 원 등 2개월간 60만 원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수령하였다.

○ 이후, 복직하였다가 다시 2023. 2. 28.부터 2023. 12. 27.까지 육아휴직 중에 2023. 3. 28. 육아휴직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였으나, 1회 지급 규정으로 4개월분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고충 민원을 신청하였다.

## □ 관계 법령 등

### ○ 「아산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4조(장려금 지원 등)

①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은 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기간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다만, 육아휴직 대상 아동에 대하여 1회에 한한다.

## □ 판단 및 결론

○ 조례의 취지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 생활의 양립과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 점, 최근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8 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를 심각한 상황으로 인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신청인에게 이 민원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 조례의 제정 취지를 크게 훼손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인근 시군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에서도 1회로 제한하여 지급하는 지자체는 없으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제2항에서도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바, 신청인의 1회 제한 없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요청하는 잔여기간의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조례의 1회 제한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토록 제도개선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